

정책 2006-63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변용찬 임성은
이익섭 조형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지난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권리협약이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비롯하여 7개의 국제인권조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 중 여성, 아동, 난민, 이주노동자 등 취약한 소수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은 있으나 소수자 영역 중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조약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장애인의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장애인권리선언’과 같은 선언 등이 다수 있지만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강제력 있는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은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장애 관련 문제와 그 해결책 마련에 있어 사회복지 차원의 시혜적 관점으로 규정되어 왔다. 또한 전통적인 의료적 장애 접근방식에 따라 장애인들은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장애 관련 전문가로부터 복지, 재활, 의료 중심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유형의 차별, 사회적 억압 및 배척, 각종 형태의 폭력 및 학대 등 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을 인격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장애인 역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장애인 문제 접근방식에 있어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인권협약의 제정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 정부가 장애인의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장애인의 자율성 및 존엄성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오래된 염원에

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개별 국가에게는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재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안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이루어낸 성과 및 의의와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변용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임성은 연구원, 이익섭 연세대학교 교수,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김강립 팀장, 유주현 사무관, 김정연 사무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우리 원의 김미숙 박사와 김상철 박사, 권선진 평택대학교 교수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신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아울러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목 차

요 약	7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2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 제정배경 및 성과	45
제1절 제정배경	45
제2절 성과	47
제3장 국제 장애인권 관련 협약 및 규칙 검토	49
제1절 6대 인권협약 검토	49
제2절 장애 관련 국제 선언 및 규칙 검토	71
제4장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주요내용	81
제1절 총론 및 실체적 조항	81
제2절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	109
제3절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17
제5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130
제1절 장애인 인권의 역사적 의미	130
제2절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배경에 나타난 대립된 생각들	131
제3절 핵심 과제와 국내법의 적용	133
제4절 한국의 대응과 의무	143
참고문헌	145
부 록	147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현재 7개의 국제인권조약이 존재하나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조약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장애인 인권 관련 선언 역시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유형의 차별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나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강제력 있는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목적은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인격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보장하는 것임.
 - 궁극적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억압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의 마련임.
- ☐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임.
- ☐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개별 국가에게는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재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임.
- ☐ 본 보고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조항별로 정부의 입장 정리를 지원하고, 성과 및 의의와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배경 검토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추진배경과 여러 국가들과 세계장애시민단체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본 협약 제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장애인권리협약 추진과정 및 성과 검토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본 협약 제정과정에서의 한국정부와 한국 장애인단체의 참여와 성과에 대해 고찰함.

☐ 장애인권리협약 개별 조항 조문내용 검토

- 각 조문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조문이 마련된 배경과 제정과정, 조문별 각국 및 장애시민단체의 입장,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함.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문내용 및 주요쟁점 검토

- 절차적 규정을 포함하여 18개조로 구성된 선택의정서에는 개인통보, 직권조사, 조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선택의정서의 조문내용, 구성요소, 주요쟁점을 총체적으로 검토·분석하였고, 선택의 정서 비준 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음.

2. 연구방법

☐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과 장애인관련 국제 선언 및 규칙을 검토하고 분석함.

☐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 당사국과 장애시민단체의 발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단체 대표자, 학계, 국회 및 정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마지막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추진연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함.
- 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 채택 이후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현황과 전망, 구성과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 제정배경 및 성과

제1절 제정배경

- 장애인권리협약은 가장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됨.
-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회적인 무능력자로 간주되었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수의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남.
 -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장애인의 존엄성·생명·생존권 존중을 의미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함.
- 1987년 UN총회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3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제안하면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논의가 시작됨.
 - 재정적인 부담과 유사한 기존의 국제인권조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멕시코의 Vincent Fox 대통령의 제안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됨.
 - 2002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8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각 당사국 및 장애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함.

- 최종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됨.

제2절 성과

-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됨.
 - 기존 7대 국제인권조약 이후 그 적용범위를 장애인으로 확대한 협약으로서 장애인의 인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호, 완성하는 것임.
 -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국제사회가 강조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협약 성안 과정에서 협약의 대상자이자 주체인 장애인 당사자와 협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각 당사국 정부가 공동으로 협약을 완성함.
 - 정부와 장애인간의 의견 대치를 줄이고 장애인의 입장이 많은 부분 반영됨.
-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본 협약과정에 참가하여 제6조(여성장애인), 제20조(개인의 이동), 제19조(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가 별도 조항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둠.
 - 특히 별도의 장애여성 조항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2007년 3월 30일에 서명개방이 되어 이때부터 당사국이 비준할 수 있으며, 협약은 20개국 이상, 선택의정서는 1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비준에 앞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관련법이 서로 상치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요구됨.
- 장애인권리협약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8개조로 이루어진 선택의정서를 포함하고 있음.

제3장 국제 장애인권 관련 협약 및 규칙 검토

제1절 6대 인권협약 검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자유권 조약이라고도 불리며, 1966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2년 기준 UN의 189개국 가운데 148개국이 인준하였음.
 - 특별히 장애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의 성격을 가지므로 장애인 역시 동 조약의 조항들에 적용을 받음.
- 장애의 맥락에서 인간의 생존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자유권 조약의 권리들
 -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삶의 권리로서 특히 장애를 가진 신생아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안락사” 행위에 의해 침범을 받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권리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서 특별히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을 금지하고 있음.
- 인간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정신질환자를 강제구금 시키는 문제와 관련이 있음.
 - 강제구금의 합법적인 근거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임.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도 인도적인 대우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하지 못할 경우 무료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한 심리에 대한 권리와 같은 형사소송 절차상의 중요한 권리들을 확인하고 있음.
- 자유권에서는 민사와 형사상의 사건 모두에 있어 정당한 법 절차를 받게 하는 핵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전의 자유는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는 대중교통과 거주 정책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의 맥락에서 자유권 조약과 사회권 조약 이 두 영역의 권리들이 서로 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뚜렷이 보여줌.
 - 결사의 자유, 가족의 권리들, 아동보호권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 등은 장애의 맥락에서 연결되는 자유권 조약의 권리임.
 - 사상과 의견의 자유권,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공적인 업무경영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 그리고 평등권 등은 장애의 맥락 속에 있는 자유권 조약의 정치적 권리들임.
2. 장애와 사회 정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은 1966년에 완성되었으며, 2002년 2월 8일에 이르러 145개 국가가 비준함.
 - 장애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사회권 조약이 보호하는 권리들은 크게 차별금지에 관한 권리, 참여를 촉진하는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기타 사회권 조약의 권리로 구분됨.
 -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 심사를 통해 각국의 사회권 조약의 실행여부를 감시함.
 -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5번은 장애의 관점에서 사회권 조약의 권리를 해석하고 있으며, 장애의 관점에서 사회권 조약에 의한 각 국가의 의무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
 - 당사국은 장애인이 사적인 분야에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협의하여 법률, 정책, 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장애인들의 자립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인 보조의 제공이 필요함.
 -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광범위한 권리
 - 사법적인 조치, 사회 정책적 프로그램, 성별 등을 포함함.
 -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권 조약의 권리
 - 통합교육과 평등 및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교육적 설비와 지원 장치 및 서

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권의 보장이 필요함.

- 장애를 가진 유아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성적 및 생식적인 건강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여 모든 건강권을 보장받고 동의 없는 의료행위 또는 실험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욕구와 완전한 참여와 평등에 바탕을 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함.

□ 장애인의 일할 권리의 실현을 위해 물리적 및 기타 다양한 장벽과 지속적인 차별의 제거가 필요함.

- 장애의 맥락에서 사회권 조약의 일할 권리의 핵심은 차별금지, 자유노동시장에서의 주류 고용에 대한 강한 선호와 보호 고용시장에서의 적절한 보호임.

□ 국가는 사회 보험을 포함해 사회 보장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식해야 하며, 장애나 장애 관련 요소들로 인해 고용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수입 지원을 보장해야 함.

□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임신 및 모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언급하고 있음.

- 장애인의 성 경험과 성적인 관계와 부모로서의 경험에 대한 기회를 박탈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입양이나 양육에 불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결혼, 성, 장애인(특히 소녀들과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 시켜야 함.

□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는 충분한 음식과 주거 의류와 같은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원 및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인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를 보장함.

- 문화 공연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을 개발해야 함.
- 장애인의 동등한 문화생활 참여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장벽이 제거되어야 함.

3. 인간의 보전과 장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Covenant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 ☐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은 금지되어야 함.
 - 특히 본인의 자유로운 승인 없이 의료나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장애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복지와 존엄성 및 자율성 존중을 위해 고문에 대한 법적 인 보호가 필요함.

4. 성과 장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 UN총회는 1979년 동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 2월 8일 현재 168개국이 인준함.
 - 궁극적 목표는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이며,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차별의 원인을 찾아내고 없애는 것이 필요함.
-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차별금지 권리는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등 모든 인권 분야임.
 - 특히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주로 개인의 범위에서 이루어짐.
-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모든 여성을 보호하므로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나 차별대우가 성별 때문인지 장애 때문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금지, 교육 및 고용 기회에서의 차별 금지가 요구됨.

5. 아동과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 UN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총 191개국이 비준함.
 -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의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시민,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

- 제23조는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존엄성 및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환경 마련을 인식함.
 - 장애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권리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및 자원 활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6. 장애와 인종차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 동 조약은 1965년 12월 UN에서 채택되었으며, 국제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유일한 법적 도구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님.
 - 동 조약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가능함.
 - 인종과 장애로 이중 차별 받는 경우-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 모두에게 관련 될 수 있음.
 - 인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념인 소수인종과 언어에 장애를 하나의 분야로서 추가 가능함.

제2절 장애 관련 국제 선언 및 규칙 검토

1. 정신지체인 권리선언(1971년)

-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은 정신지체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모든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신지체인의 동등한 기본적 권리, 건강 및 재활에의 권리,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생존권과 노동권, 가족들과 함께 살 권리, 자격 있는 후견인을 가질 권리, 착취와 남용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법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있음.

2. 장애인 권리선언(1975, UN 제 30차 총회에서 채택)

-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모든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 나아가 장애인도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또한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이와 같은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적극적 시책을 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 장애인 권리선언을 통해 그 동안 시혜적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복지 시책이 하나의 권리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지적할 수 있음.

3. UN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 프로그램(1982년)

- ☐ UN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장애인 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을 발표함.
 - 장애와 관련된 기본 이념, 모든 용어의 정의, 장애발생의 기전, 장애정책의 중요성 등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 장애예방, 재활, 그리고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여 사회생활과 개발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평등과 완전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채택하도록 하는 세계전략 지침을 설정하고 있음.

4. 장애인 기회 평등을 위한 표준규칙(1993)

- ☐ 장애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달성하려는 UN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1992년에 종료된 ‘UN장애인 10년’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됨.
 - 표준 규칙의 배경과 필요성, 지금까지의 국제 이행, 표준 규칙을 향하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UN장애인 10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함을 시사하고 있음.
- ☐ 개요와 전문, 그리고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지침에 해당하는 총 22개의 규칙과 191개의 세부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장애인의 기회의 균등화를 향한 각국의 정치적 및 도덕적 참여를 포함하고 있고, 국가의 책임, 행동, 협력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었으며, 삶의 질과 완전한 참가 그리고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가 선정됨.
-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장애인의 존엄성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음.

5.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2002)

- UNESCAP은 UN의 세계장애인의 해(1983-1992)에 이어 선포된 아·태지역 장애인 10년(1993-2002)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제2차 아·태지역 장애인 10년(2003-2012)을 이끌어갈 계획으로서 비와코 행동계획을 결의함.
-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해 통합적이고 장벽 없는,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취해야 하는 정책권고안들을 담고 있음.
 - 통합적인 사회란 모두를 위한 사회를 의미하며, 장벽 없는 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 외에도 물리적으로, 또한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 장벽이나 장애가 없는 사회를 의미함.
 - 권리에 기초한 사회는 발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 개념에 기초한 사회를 의미함.
- 우선순위 정책영역은 장애인의 자조단체와 관련 가족 및 부모조직, 장애여성, 조기발견, 조기개입 및 교육, 훈련과 자영업을 포함한 고용, 건축환경과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 정보, 의사소통, 보조공학을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에의 접근, 역량강화, 사회보장과 생계유지프로그램을 통한 빈곤경감임.
- 원칙과 정책방향, 7대 우선과제 영역,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협력과 지지, 모니터링과 평가 등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가지의 주요특성을 가짐.
 - 아·태지역의 장애관련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과제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 우선과제 영역별로 주요 현안, 목표, 행동과제 등의 하위체계로 구성하여 구체화시킴으로써 정책의 규범적 가치와 실천적 수단의 명확화를 기하고 있음.
 - 정책과정에서 장애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장애문제 접근에 대한 사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제4장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주요내용

제1절 총론 및 실체적 조항

□ 전문

- 전문은 해당 법령 제정의 취지·목적·기본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조문의 규정과 동시에 적용될 때 효력이 발생함.
- 총 25개의 호로 구성되어 장애인권리협약이 다양한 국제사회의 인권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동등한 권리 및 자유의 존중 원칙을 반영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선언적인 규정을 하고 있음.

□ 제1조(목적)

- 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설명적인 형식의 장애인 정의를 “장애인은 다양한 저해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였음.
- 장애인을 더 이상 시혜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함.
- 장애인의 정의에 있어 의료적인 모델과 사회적인 모델을 모두 적용하여 다양한 범주의 장애개념이 해석 가능하도록 각 당사국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제공함.

□ 제2조(정의)

- ‘의사소통’, ‘언어’,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인 편의제공’, ‘보편적 디자인’의 5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의사소통’과 ‘언어’는 그 뜻을 정확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음.

- 합리적인 편의제공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특성이나 운영에 비합리적으로 지나친 부담이나 간섭 없이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제3조(일반원칙)

- 총 8개 일반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차별 금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 장애 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이 본 협약에 규정된 원칙임.
- 일반원칙은 장애인권리협약 전 조항의 해석 및 응용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으로 본 협약 목적의 실현을 위한 주된 요소임.

□ 제4조(일반의무)

- 각 사회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및 자유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입법적, 정책적, 행정적 의무사항들과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의무는 즉각적인 조치 마련과 점진적인 이행으로 구분됨.
- 동 협약의 실현과정에서 절대적인 자원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점진적 실현이 가능함.
- 생명권, 신체와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 보장에 관한 권리 등 자유권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별적 행위의 시정을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실현이 적용되어야 함.

□ 제5조(평등과 차별금지)

- 각 당사국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차별 발생 시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호,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차별로 간주되어 당사국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나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기본적인 비차별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모든 조치들은 타 조항에도 적용됨.

□ 제6조(여성장애인)

- 동 조항의 존치여부를 두고 찬반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인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됨.
- 동 조항에서 간략한 핵심원칙만을 언급하고, 장애여성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특수욕구가 필요시 되는 영역과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거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일부 조항에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Twin Track Approach가 적용됨.
- 전문 (n), (o), (q), 제3조(일반원칙), 제16조(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25조(건강), 제28조(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권리보장 및 성별의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 포함됨.
-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제1항에서는 각국이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제2항에서는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 마련 및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7조(장애아동)

- 동 조항은 제6조와 함께 존치여부에 대한 논쟁이 많았으나 동일하게 Twin Track Approach가 적용되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됨.
- 전문 (r), 제3조(일반원칙), 제18조(이주의 자유),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4조(교육), 제25조(건강),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에서도 장애를 가진 아동의 권리보장이 규정됨.
- 총 3항으로 구성되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간의 동등한 권리 보장 및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 장애아동을 최우선시한 정책, 프로그램, 법률의 마련,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한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의 보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제8조(인식 제고)

-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편견의 제거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조항이 마련됨.

- 제1항에서는 전반적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2항에서는 이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
- 인식의 전환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므로 인식제고를 위한 각 당사국의 조치는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 제9조(접근성)

- 합리적인 편의제공과 함께 장애인의 고유한 특수성을 배려한 조항으로서 접근성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인 대중교통, 정보, 의사소통 기술 및 기타 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접근을 포함함.
- 접근성은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부담이 크고, 가용자원 및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점진적의 실천의무로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이 많다고 볼 수 있음.

□ 제10조(생명권)

-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없는 최고의 권리로 모든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통해 규정됨.
- 생명권의 범주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재해, 무력충돌 대치 상황, 외국군 주둔과 같은 위험 상황은 제11조에 별도로 구성됨.
- 당사국은 장애인의 생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생명권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제11조(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 생명권의 확대된 범주로서 다양한 위험상황 및 인도적 위급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됨.
- 중동 국가에서 ‘외국군 주둔, 국제분쟁의 위험’ 등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어 찬반 투표 실시 후 전문 (u)호에 ‘외국주둔, 무력충돌의 위험’이 포함됨.
- 장애인이 위험 또는 위급상황에서 장애를 이유로 치료 또는 구조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제12조(법 앞에서의 평등)

-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

로 하여 마련됨.

- 장애인의 ‘법적능력(legal capacity)’을 제한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평등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의장은 법적능력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능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개념정의는 개별국가의 법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국의 다양한 법체계를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힘.
- 장애인의 법권권한의 행사를 위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 있는 입법 또는 조치들이 오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safeguard)를 규정함.

□ 제13조(사법접근성)

- 장애인의 사법 절차에서의 물리적 장벽의 제거 필요성 및 실질적인 법적 접근성 보장을 위해 규정됨.
- 법적능력과 보호제도에 관한 조항인 제12조(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를 보충해 주는 조항으로서 법적체계(법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조적이고 개별적인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사법절차에서의 접근성과 관련한 국가 당사국의 의무는 즉각적인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편의제공의 규모와 교육 훈련의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는 각 당사국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함.

□ 제14조(개인의 자유와 안전)

- 장애인의 자유로운 신체적·정신적인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법적구속 문제가 발생시 그 절차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됨.
- 특히 정신장애인 강제시설수용 관련, 국내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구금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제1항 (b)호의 ‘각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라는 문구는 삭제됨.
- 법에 의한 구속이라 할지라도 범죄가 아닌 장애인의 의사 또는 의지에 반하는 자유의 박탈은 불법적이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제15조(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를 반영하여 2개의 항으로 구성함.

- 비자발적인 의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장애인의 완전성과 존엄성의 보호를 목적을 하고 있으며 자유권에 해당되는 권리로써 권리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 제16조(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항이 마련됨.
- 특히 착취나 폭력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여성과 아동을 고려하여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여’라는 문구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모든 유형의 폭력, 착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제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

-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발적인 치료의 제한과 보호의 문제로 인해 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기존의 안은 모두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장애인 본연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고유성 침해시 각 당사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규정되지 않음.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장애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자율적인 국적 소지 및 변경 권리와 결합하여 거주지역과 국적에 대한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출생 후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이주 및 국적에 대한 권리는 안전에 관한 자유권으로서 당사국은 이를 보장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함.

□ 제19조(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

- 동 조항의 취지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의 조건과 생활양

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며,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 것임.

- 활동보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은 완전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완전한 자립을 의미하는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대신 ‘자립적으로 생활하기(living independently)’로 용어를 수정함.
- 장애인이 ‘특별한 주거시설’에 거주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장하여 시설입소보다는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 장애인의 자율적인 생활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 또는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지원 서비스 제공은 점진적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장애인의 각기 다른 욕구를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반영함.

□ 제20조(개인의 이동)

- 이동성을 접근성의 하위 분야로 간주하여 제9조(접근성)에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환경에 접근 가능하다는 접근성과 장애인 개인이 움직여서 이동가능하다는 이동성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독립적인 조항으로 유지됨.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동 조항에서의 이동(mobility)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movement)과 그 의미가 다르므로 개인적 이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됨.
- 이동성은 광범위한 의미의 접근성에서 분리된 개인의 물리적 이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그 구성에 있어 최대한 독립적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들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부족한 사회적·경제적 자원, 기술, 등의 제약이 있을 국가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와 본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정보검색, 정보 수집 및 배포의 권리와 정보접근성의 보장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동 조항의 규정은 장애와 그에 따른 다양한 의사표현체계를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제22조(사생활 존중)

- 초안에서는 개인, 가정, 가족, 건강 및 재활동 정보 영역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가정 및 가족에 관한 부분은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로 분리되어 규정됨.
-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사생활, 가정, 서신, 명예 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금지를, 제2항에서는 사생활 및 건강에 대한 정보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 사생활 보호는 필연적으로 요구는 것이며 각 당사국은 서신을 포함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보장과 개인의 명예와 신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법률을 규정할 의무를 가짐.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제22조에서 분리된 조항으로 당사국들은 가족 또는 가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자국의 사회와 법 체제 내의 해석방식에 따라 동 조항에서 언급되는 보호를 제공해야 함.
- 궁극적으로 다양한 장애인 개인의 가정 및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장애아동의 가정 내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됨.
- 총 5개 항으로 구성되어 모든 가족 및 가정문제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근절, 장애아동의 가정 내에서의 권리보장, 그리고 각 당사국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24조(교육)

- 총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적인 원칙은 통합교육으로서 장애인을 일반 교육시스템에서 격리하지 않고 장애인의 다양한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의 촉진을 그 목표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권 실현을 위해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합리적인 편의시설과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 등으로 고려한 개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함.
- 당사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교육체계와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과 잠재력, 존엄성, 인권 및 자유의 존중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제25조(건강)

- 초기에는 ‘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였으나 건강권과 재활권을 구분하여 동 조항에서는 ‘건강’을, 제26조에서는 ‘재활’을 규정함.
- 당사국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이 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건강권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의 채택, 개정 또는 정보의 보급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어야 함.
- 장애인의 의료보험 또는 생명보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제26조(재활)

- 의료의 범주 내에서 재활을 규정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재활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
- 장애유구별 다양한 재활의 방법과 재활서비스의 강화, 재활서비스 전문가 및 실무자에 대한 훈련의 개발, 장애인재활보조기구와 기술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 재활에 있어 장애인의 자립 및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 교육, 훈련 및 개인 역량 구축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제27조(근로 및 고용)

- 고용부문에서의 장애인 차별 및 착취의 심각성과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노동권이 규정됨.
- 세계노동기구 조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조약과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애인의 노동 시장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제공과 차별적인 우대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막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대안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제28조(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 장애인의 ‘적정한 수준의 삶의 질 보장’과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마련됨.
- ‘사회보장(social security)’보다 포괄적인 용어인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를 사용하여 적정한 삶의 기준의 범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적용됨.
- 총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리고 이들의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각 당사국이 취할 조치들을 나열함.
-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써 각 당사국들은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5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와 같은 유사 조항을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본 협약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함.
-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투표권 등의 행사에 적용하는 조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하나 법으로 확정된 정신적 무능력에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정신장애인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은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 동 조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포츠 참여, 관광과 아동의 놀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모든 당사국의 지지에 의해 마련됨.
-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문화생활 등에 관한 권리 향유와 접근성 보장과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지적재산권과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인정하는 규정을 통해 장애의 다양성과 언어 및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음.

□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

- 별도의 조항 규정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자료 수집을 통해 장애인차별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당사국 정부가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장애인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존중과 정보가 오용될 위험성이 있고, 통계는 정책 도구로서 유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료 수집에 소비될 자원들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최종적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용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수집, 수집된 정보의 올바른 사용과 구성요소별 자료수집, 그리고 통계의 보급 및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자료의 접근성 보장으로 내용이 구성됨.
- 차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점진적인 이행이 가능하나 개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과 윤리원칙을 준수한 조사과정 및 자료의 사용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제32조(국제협력)

- 국제협력의 별도 조항 규정 여부 및 범주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조항으로 규정됨.
- 별도 조항을 지지한 국가들은 본 협약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해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국제협력이 협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데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대함.
- 이러한 악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에 본 협약 이행의 일차적 의무는 각 당사국에 있음을 밝히고 편견 없이 의무의 준수를 규정함.
-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국의 기술지원, 경제적 지원, 선진사례 등은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자신의 역량을 증대 및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제2절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

1.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 정부 내 전담부서 및 조정기구 설치

- 전담부서는 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실(장애인정책팀)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됨.
- 조정기구는 현재 장애인 정책 총괄 조정·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비상설기구로서의 한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독립적 국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국제인권조약의 일반논평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2. 장애인권리위원회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장애 및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60개국의 비준 또는 승인 이후에는 최대 1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됨.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고, 정부보고서 검토와 선택의정서상의 개인 통보에 대한 심사 및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inquiry)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례 보고서를 UN총회에 제출해야 함.

☐ 7개의 국제인권조약은 각각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러한 위원회들은 당사국들로부터 해당 조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고 검토할 권한을 가짐.

- 당사국이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지침들의 발간하고, 조항의 해석을 제시하는 일반논평을 발행하며, 조약과 관련된 주제 토론 등을 개최함.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보고서 심사,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 및 진상조사(inquiry)는 물론 다른 주요 국제인권조약상의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3. 정부보고서

- ☐ 당사국은 해당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님.
 - 최초 보고서를 해당 협약 비준 후 2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최소 4년마다 본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 정부보고서 준비과정은 국제적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당사국 내 정책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인권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임.
 -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 및 국내정책간의 조화를 위해 취해진 국가의 조치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
 - 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 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불충분한 점에 대한 확인
 - 국제인권조약의 더욱 효과적 이행을 위한 미래의 목표와 필요성 평가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설립 및 개발
-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사과정
 - 정부보고서 제출
 - 쟁점목록(List of issues) 송부
 -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응답
 -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 입수
 - 정부보고서 심의
 - 최종견해
 - 최종견해의 이행
- ☐ 당사국이 오랜 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검토 절차(review procedure)”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제3절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 개인통보

- ☐ 개인통보제도는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인이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UN 해당위원회에 진정 (communication)을 하고, UN 해당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해당 국가의 국제인권조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임.
- ☐ 개인통보제도의 심리 절차
 - 통보의 접수
 - 심리적격의 검토
 - 본안심리
 - 위원회의 견해 제시
 - 잠정조치
- ☐ 본안심리가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심리 적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심리적격에 관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권리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한 후 진정을 제기해야 함.
- ☐ 통보의 주체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또는 이들의 대리인임.
- ☐ 피해자는 당사국의 작위 내지 부작위로 인하여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함.
 - 본안심리에서 진정인이 실제로 피해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
 - 이미 권리를 침해했거나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의 법률, 정책, 관행,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 선택의정서 가입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통보

제기가 가능함.

-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음.

☐ 진정인은 국내 구제절차 완료의 의무가 있으며 당사국에게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의 제공의무가 부여됨.

- 사법적 성격의 구제에 한정되며 구제의 대상은 침해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임.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효과적 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일반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최종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간주해야 함.
- 효과적 구제수단이란 구제절차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진정인의 입장에서 구제절차가 합리적 수준의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함.
- 국내 구제절차가 당사국이 권리구제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됨.
- 제출된 개인통보에 관하여 국내적 구제 미완료료를 주장하려면, 당사국이 이를 입증해야 함.

☐ 개인통보가 협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음.

- 협약상 보호되지 못하는 권리나 침해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개인통보의 심리에 있어서 통보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일방당사자이므로 신원확인 이 되어야 함.

☐ 이미 기각된 사안을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소하는 경우 혹은 해당 진정건이 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면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각하됨.

-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나 주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증거의 제출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음.

☐ 심리적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및 의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심리가 행해짐.

- 입증책임
- 위반의 판단

□ 개인정보의 법적 효력

-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직접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조약 위반 판정이 있으면 이에 대한 구제조치의 필요
- 위 두 가지 견해의 절충

2. 위원회의 조사권

□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믿을 만한 정보(reliable information)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조사 실시 전 당사국에게 정보를 확인을 위한 협조와 의견 제출 요청
-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1명 이상의 위원의 비공개 조사
- 조사의 결과에 코멘트와 권고문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
-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 후속조치

□ 각 당사국은 선택의정서 서명 또는 비준, 가입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음.

제5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제1절 장애인 인권의 역사적 의미

□ 일반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일반 인권의 확대 적용으로 축소하여 이해됨.

- 1948년에 천명된 인권선언을 필두로 하는 7대 인권조약 및 조약들 이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마지막 영역으로 장애인의 인권협약이 다루어짐.

□ 장애인 인권은 특수 집단의 인권이면서도 세계 보편적 인권의 필요성을 정당화 하는 지시적 경험이며 인권의 보편성에 도전하는 인간적 고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음.

- 장애는 특수한 경험이며 어느 집단보다 절실한 우선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상임.

제2절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배경에 나타난 대립된 생각들

1. 차별금지과 사회개발: 유럽연합(EU)과 타 지역의 대립

- EU는 동 협약이 모든 인간의 권리의 회복에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회복의 핵심은 자연 차별금지가 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인권이 장애인에게도 구현될 수 있도록 협약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협약이 추구하는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차별금지를 근간으로 구성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고수함.
- 반면 사회개발 모형을 강조하는 방콕 초안 및 비정부 단체의 안은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협약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
 - 특히 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은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현실을 무시하였으며, 장애인에게는 일반 비장애인과 다른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EU의 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
- 사회개발 모형은 세부적인 국가 개입을 적시하려 노력하는 반면 차별금지 모형은 원칙적이고 보다 간명한 형태를 강조하면서 회의 전반에 걸쳐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줌.

2. 장애인당사자단체와 정부의 대립

-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협약의 성안을 희망하였으며, 회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 세계정신장애인협회의 탈시설화 및 강제입소와 퇴소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 보장을 주장함.
 - 국제농인협회는 수화의 언어로서의 보장과 다양성의 인정 등을 주장함.
- 각 당사국 대표들은 당사자 단체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자국 내에서의 실행상의 어려움을 표명함.
 - 저개발국은 현재의 시설의 활용이 없이는 장애인에 대한 갑작스런 변화에 대처할 재정적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함.

3. 개발국과 개도국의 대립

- 개도국들은 향후 장애인정책에 관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교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제협력을 협약에 명문화함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함.
- 이에 반해 개발국들은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의 장애인의 자국의 의무를 회피하고 이를 국제협력의 당위성으로 대체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함.
 -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 역시 EU 국가들이었으나 다수의 국가와 NGO 등의 반대로 국제협력을 명문화함.
 - 그러나 국제협력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의존적인 도구화로 전락하여 자국 내에서의 1차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려는 핑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됨.

제3절 핵심 과제와 국내법의 적용

1. 장애의 정의

- 장애의 정의가 제1조 목적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간명하게 그리고 “장애”가 아닌 “장애인”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
 - 장애의 법적 정의는 그 나라의 정책 대상과 예산에 직결되는 기본 요체이고, 그 대상 범위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법적 효력의 범위가 변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장애에 대한 의학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다르며 국가 마다 정책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의료적 모형에 입각한 최소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대표들과 사회적 모형에 근거한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비정부 조직들 간에 의견이 대립됨.
 - 최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 대표들 대다수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형이 초래한 국내의 경제적 비용을 사회의 부정적 부담으로 간주함.
 - 비정부 대표들은 장애인의 인권 회복이라는 필수적인 의무수행을 위한 협약의 정신을 당사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함.
- 최종적으로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와 같은 고정적 입장을 회피하고 “다음

을 포함한다”와 같은 개방형을 택하여 대립적 요소를 최소화함.

- 사회환경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순수한 손상만을 장애로 보지 않고 사회참여가 어려운 현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향후 한국의 장애의 판정 기준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수준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함.
 - 손상이라는 기준은 장애의 정의에 있어 최우선의 선결 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함.
 - 장애는 당사자가 처한 장벽과의 함수관계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 장애 정책을 위한 평가 지표는 사회참여 수준이며 그 평가 기준은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성되어야 함.

2. 법적 권한(legal capacity)

- 장애인의 법적권한은 핵심적인 장애인의 권리이나 일부 장애인에게는 권리가 제한되어 왔으며, 법적권한(legal capacity) 개념 해석을 놓고 국가간의 입장 차가 심각했음.
 - 중국과 아프리카 및 아랍을 중심으로 하는 상당수의 정부가 법적 권한을 행위가 아닌 자적으로 제한하는 각주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IDC와 EU 등은 이의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주 삭제에 합의하여 법적 권한의 본래 의미가 유지됨.
- 장애인의 법적 권한의 행사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 장치로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그 안전장치(safeguards)를 규정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함.
- 국내법 적용에 있어 국내법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인의 권한 제한 조항들과 이로 인해 연관되는 법적 및 제도적 개정이 필요함.
 - 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한 후견인 제도, 지원 체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safeguards)의 마련,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도 검토, 그리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성과 지표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3.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과 차별금지

- ☐ 장애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한 요소가 됨.
 -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제공되지 않음을 차별적 상황으로 해석하는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와 같이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당사국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합리적인 편의제공은 특히 자유와 안전, 교육, 그리고 노동과 같은 부문에서 결정적인 요소임.
 - 제2조(정의)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의 거부도 차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4. 점진적 실현의 원칙(progressive realization)

- ☐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 고용, 건강, 재할, 사회보장, 또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과 같이 자원의 활성화가 절대적인 영역에서 협약이 언급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 장애인의 사회권을 실현함에 있어 점진적 원칙을 전제로 하되 가능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의무화하고 즉각적인 국제법 적용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고의적 회피를 금하고 있음.
- ☐ 그러나 장애인 권리협약의 내용 중 자유권에 관한 사항들에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실현이 적용되어야 함.
 - 특히 차별적 행위에 관한 시정에 있어서는 권리의 즉각적인 실현이 적용되어야 함.

5. 장애여성의 권리

- ☐ 장애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차별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해결을 위한 접근 중 별도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하였음.
- ☐ EU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별도의 장애여성 조항의 존치를 반대함.
 - 장애여성의 별도조항은 협약이 추구해야 할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됨.

- 여성과 같은 별도의 집단에 따라 조항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원주민 장애인 등의 각각의 조항이 필요하여 협약의 간결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오히려 장애여성을 강조할 경우 다른 집단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 별도조항의 설치에 장애여성의 다양한 문제를 당해 조항의 국한된 사항으로만 축소 해석할 수 있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협약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 진술할 필요가 없음.

□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별도의 장애여성 조항 존치를 주장함.

- 보편성은 유지되어야 하나 권리협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의 실익을 고려해야 함.
- 장애인권리협약 내에서 장애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장애여성 조항은 정당함.
- 성은 단순히 하위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 영역에 적용되는 포괄적 차원임.
- 장애여성의 권리 조항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성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 장애여성에게는 성 착취, 폭력, 학대, 출산권, 양육 등의 특별한 요구가 있으며, 현존하는 불평등을 감안할 때, 교육 및 고용 등에 접근하는데 있어 별도조항이 필요함.

□ 장애여성조항 마련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절충안이 제시됨.

- Stand-Alone Approach: 장애여성관련 내용을 총 망라하여 하나의 조항 속에 규정함
- Twin Track Approach: 별도조항에는 핵심원칙만을 언급하고 세부사항들은 관련조항에 포함함.
- Main-Streaming Approach: 별도조항을 두지 않고 전문과 일반적 의무 및 관련조항에 걸쳐 장애여성 관련내용을 포함함.

□ 각 당사국간 의견 조율과 EU의 양보로 Twin Track Approach을 적용한 별도의 장애여성 조항 제6조가 최종적으로 마련됨.

- 별도의 조항은 마련되었으나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됨.

□ 모든 당사국들은 향후 보고서 제출시 별도의 장애여성 항목을 두어 작성해야 하며 장애여성에 관한 국내법 개정이 필요함.

6. 자립생활

- ☐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복지의 한 모형이자 권리회복의 중요한 차원으로서 자율성과 자기결정이 핵심적 개념임.
- ☐ 일부 당사국들은 자립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지역사회에서 확대 가족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이해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반드시 방지되어야 함.
- ☐ 국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립생활과 같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사회의 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인권이며, 활동보조 서비스는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
 -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지만,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7. 접근권과 이동권

- ☐ 접근권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즉, 대중교통,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에 접근을 포괄하고 있음.
 - 접근권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이어 또 하나의 고유한 장애 관련 조항임.
 - 접근권이 사회권인 경우 점진적 실현의 대상으로써 즉각적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접근권의 불허를 차별로 보는 경우 사회권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의 대상이 됨.
- ☐ 이동권은 장애인이 환경에 접근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환경이 접근가능하다는 것과 장애인이 이동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해야함.
 - 이동은 개인적인 것이고 접근은 환경적인 것을 의미함.
 -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반지원(Live Assistance) 등 다양한 조치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

제4절 한국의 대응과 의무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제반 법률의 정비

- 정부,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상충 부분을 검토하고, 권리협약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논의가 필요함.

☐ 서명개방식의 참여와 비준 준비

- 2007년 3월 30일에 서명개방이 시작됨.

☐ 국제 장애인 인권 기금의 조성

- 한국은 기타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인식하고 국제 장애인 인권 기금을 조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